

- 2026년 전북핀테크지원센터 지정 운영 사업 - 「핀테크 라이징 스타 챌린지」 참가자 모집 공고

(재)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우수 핀테크 기업·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, 사업화 및 전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「핀테크 라이징 스타 챌린지」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10월 14일

(재)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

I 모집개요

□ 사업목적

- 전국 단위 핀테크 공모전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우수 핀테크 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발굴
- 우수 기업의 사업화 및 전북 정착을 위한 후속 지원을 연계하여 지역 내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및 성장 기반 마련

□ 주요내용

- 모집기간 : 2026. 10. 14.(수) ~ 2026. 11. 12.(목)
- 모집대상 :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, 향후 사업화 및 성장이 기대되는 전국 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이내 기업(팀 포함)
- 모집분야 : 「금융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핀테크」를 주제로 한 지역 금융, 농생명 금융, AI 금융, 데이터 금융, 기후·에너지 금융 분야
- 선정규모 : 총 5개 기업(팀)
- 지원내용 : 창업지원금 총 60,000천원 지급 및 창업 지원사업 연계

Ⅱ 신청 및 접수

□ 신청자격 : 전국 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이내 기업(팀)

① 예비창업자 : 공고일(2026.10.14.) 현재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, 법인설립등기를 통해 창업하지 않은 자

※ 팀으로 신청하는 경우 팀 구성원 전원이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

② 창업기업 : 공고일(2026.10.14.) 기준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인 기업

※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,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

※ 공동 또는 각자대표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

□ 신청제외 대상

○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및 규제 중인 자(또는 기업)

○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(또는 기업)

○ 창업지원기관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(또는 기업)

○ 동일·유사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 체결 후 중도 포기 또는 참여 제한으로 제재 또는 중단 처분을 받은 자(또는 기업)

○ 신청 아이템과 동일·유사한 내용으로 타 기관·지자체·중앙부처 등의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자(또는 기업)

○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(또는 기업)

○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에서 정하는 창업 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(또는 기업) **※ 붙임 1 참조**

○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또는 기업)

○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의 매매·중개·교환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(또는 기업)

○ 금융·보험업, 대부업·대부중개업 및 불법 사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(또는 기업)

○ 그 밖에 사업 목적 및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가 있다고 주관기관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자(또는 기업)

□ 신청분야

○ 공모주제 : 금융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핀테크

분야	세부내용(예시)
지역 금융	지역 상권·소상공인 결제, 지역화폐, 지역 기반 대안신용평가 등
농생명 금융	농업인·농촌지역 특화 금융서비스, 농산물 유통·정산 연계 결제 등
AI 금융	AI 기반 신용평가, 이상거래탐지, 자산관리·투자자문(로보어드바이저) 등
데이터 금융	대체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, 오픈뱅킹·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등
기후·에너지 금융	탄소배출·기후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, 에너지 효율화 금융, 녹색·탄소금융 등

□ 접수기간 : 2026. 10. 14.(수) ~ 2026. 11. 12.(목) 16:00

□ 접수방법

- 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(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, 신청서 및 동의서,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)
- 신청처 :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온라인신청플랫폼(<https://event.jbci.or.kr/>)
- 문의처 : 전북핀테크지원센터 ☎ 063-220-8993

□ 제출서류 :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, 기타증빙 서류

※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

구분	제출서류		비고
필수	참가신청서		1개의 PDF 파일로 제출
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		
선택 (해당 시)	예비 창업자	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	1개의 PDF 파일로 제출
	기 창업자	[별첨] 기업 성과 및 지원사업 수혜이력	
		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기타 증빙서류 등	

※ 여러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 신청자(또는 기업)명을 포함하여 파일명을 작성

Ⅲ 선정 및 평가

□ 추진일정



※ 추진일정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서면평가

-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5인 이내로 평가위원회 구성
-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바탕으로 아이디어의 혁신성, 시장성, 성장 가능성,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
- 고득점 순으로 발표평가 대상 총 8개사(최종 선정 규모의 1.5배수) 선정
- 서면평가 결과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 공지

□ 발표평가

-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5인 이내로 평가위원회 구성
- 서면평가를 통과한 기업(팀)을 대상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모델의 경쟁력, 실행역량, 성장·확장 전략 등을 종합 평가
- 대표 신청자인 (예비)창업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고득점 순으로 총 5개사(대상 1개사, 우수상 4개사) 최종 선정
- 최종선정기업 중도포기,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후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음
- 발표평가 결과는 현장발표 및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 공지

□ 시상 및 협약

- 전북특별자치도지사(대상),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이사(우수상) 명의의 상장 수여 및 협약체결 후 상금 지급

IV 시상 및 지원내용

□ 지원내용

구 분	기업(팀) 수	시상금	사업화지원금	후속지원
대 상	1개사	10,000천원	30,000천원	- 차년도 지원사업 우선 선정 - 창업공간 임차료 일부 지원
우수상	4개사	각 5,000천원	-	- 차년도 지원사업 서류 면제
합 계	5개사	30,000천원	30,000천원	

※ 후속지원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○ 시상금 최대 10,000천원 지원

- 대상(1개사) 수상 : 시상금 10,000천원 지급
- 우수상(4개사) 수상 : 시상금 각 5,000천원 지급

○ 선정기업 대상 사업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한 후속 지원

- 대상 수상자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내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도내를 본사로 창업을 완료하는 경우, 확인 후 5일 내에 전북 정착 연계 추가 시상금으로 사업화지원금 30,000천원 지급.

※ 단, 도내 본사 이전 또는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사를 폐업·휴업 및 전북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사업화지원금 30,000천원은 전액 환수함

- 전북에 본사를 둔 기업이 대상을 수상한 경우 사업화지원금은 시상금과 함께 지급

※ 단,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사를 폐업·휴업 및 전북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사업화지원금 30,000천원은 전액 환수함

- 휴·폐업 판단 기준 : 관할 세무서에 휴·폐업 신고를 한 경우를 말하며, 휴·폐업 신고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
- 본사 판단 기준 : 법인등기부상 및 사업자등록상 본점 소재지에 한 함

○ 차년도 지원사업 연계(후속지원)

- 차년도 금융혁신 지원사업 우선 선정 또는 서면 평가 면제
- 전북핀테크지원센터 보육·네트워킹 프로그램 연계 등

※ 차년도 지원사업의 세부 지원내용 및 선정절차는 해당 연도 사업 계획 및 공고에 따르며 변경될 수 있음

○ 창업공간 1년간 임차료 일부 지원(후속지원)

- 지원대상 : 대상 수상자
- 지원장소 : 금융혁신 공유오피스(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33-6, 5층)
- 지원공간 : 1개실

※ 창업공간 지원은 입주 희망 시기 및 상주인원 규모에 따라 입주 시기 및 지원공간이 확정되며, 공유오피스 입주기업 모집 공고에 따라 지원 자체는 변경될 수 있음

V 유의사항

□ 제안 아이템 및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

- 공모전에 제출한 사업화 아이템 및 아이디어에 관한 지식재산권 등 제반 권리는 원칙적으로 제안자에게 귀속됩니다.
- 공모전 참여 또는 수상만으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발생하거나 권리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,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출원·등록 등 별도의 권리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
- 특허 출원을 예정한 경우 발표심사 전에 출원하거나, 국내 출원의 경우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 주장을 하여 출원해야 합니다.
- 주관기관은 공모전의 심사·선정, 제출작의 홍보 및 후속 지원 등 공모전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출된 아이디어 및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홍보시 공개 범위는 제출자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합니다.
- 수상작의 사업화·권리화 및 후속 지원을 추진하는 경우,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권리관계 등은 주관기관과 수상자 간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.

□ 신청 및 선정 관련 유의사항

- 신청자는 공고문 및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- 신청자는 공모전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하여야 하며, 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및 증빙자료 제출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제출서류 및 신청내용에 허위·위조·변조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, 절차를 통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·수상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수상 이후 확인된 경우 지급된 시상금 등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.
- 제출한 사업화 아이템이 타인의 아이디어·창작물 등을 표절·도용하거나 저작권·특허권 등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, 절차를 통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·수상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수상 이후 확인된 경우 지급된 시상금 등을 환수할 수

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·형사상 책임 등 제반 책임은 해당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
- 심사 결과에 따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 규모가 조정되거나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공모전 운영 과정에서의 일정, 심사방법, 후속 지원내용 등은 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단, 시상금 및 사업화지원금 금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주관기관의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해 5년 동안 보관됩니다.
- 심사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.
- 선정자는 협약일로부터 5년간 주관기관의 사후관리 및 성과·이력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.

□ 시상금 지급 및 후속지원 관련 사항

- 시상금은 수상자 본인 명의의 국내은행 계좌로 지급하며, 시상금 지급을 위하여 본인 확인, 계좌 확인 및 세금 관련 처리를 위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시상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며,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관련 세액을 공제하고 지급함.
- 팀 수상의 경우 시상금은 대표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일괄 지급하며, 팀원 간 시상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수상자 간 협의에 따릅니다.
- 미성년자 수상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.
- 미성년 수상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시상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수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본 공모전의 수상자는 차년도 전북핀테크지원센터 및 관련 지원사업과 연계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후속 지원사업의 세부 지원내용 및 선정 절차는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공고에 따릅니다.
- 기타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관기관의 관련 기준에 따릅니다.

붙임 1 지원 제외 대상 업종

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 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<개정 2024. 8. 27.>

구분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유흥주점업	56211
2	무도유흥주점업	56212
3	카지노 운영업	91242
4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5	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※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

붙임 2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(기창업자 해당, 공고일 기준)

신청기업 구분	상세 구분			창업여부
개인기업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동종유지		창업아님
		이종		창 업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	창업아님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 업
법인기업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동종유지		창업아님
		동종의 신규 법인설립		창 업
		이종		창 업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 업
			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
		동종전환	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	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상 또는 최대주주	창업아님
			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창 업
	자회사 여부	법인 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상이면서 최대주주		창업아님
	조직변경	동종유지		창업아님
		이종		창 업
	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	창 업

- ※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함
- ※ 동종의 범위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- ※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 : 영 시행(2020.10.8.)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